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33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허성무

민병덕 · 임오경 · 황명선

한병도 • 이수진 • 윤종군

김종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.

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,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하며, 이에 맞춰 「소득세법」을 개정하고자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434호),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8436호)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3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본문 중 "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, 같은 법 제76조"를 "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행 아 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) ① (생 략)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공제액,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,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, 「조세특 ----- 「조세특 례제한법」 제58조, 같은 법 제 례제한법」 제58조-----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 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 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 출세액(제62조에 따라 원천징 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 준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그 초 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

에	따라	한노	. 액을	를 조	: 과 전	하 0=	_	상
제병	받지	못한	기투	그금	은 전	해딩	ļ 3	라
세기	기간의	다	음	라세	기간	· 라의	7	개
시	일부터	10	년 (기내	에	끝	나	三
각	과세	기간	에 여	이월	하ㅇ	4 :	제5	59
조의	의4제4	4항에	따	른	율을	<u> </u>	적-	<u>Q</u> _
한	기부	금 사	네액-	공제	액싙	<u>)</u>	계	산
하여	여 그	금	백을	공	제기	[준	산	출
세약	백에서	공기	베한I	구 .			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